

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관련 협약 금융기관에 제 2금융권을 추가하고, 특례보증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
- 나.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 금융기관 추가(안 제2조제2호마목)
(신설)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
- 나. 특례보증 지원대상 요건 완화(안 제5조제2항제1호 삭제)
(삭제) 대표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
- 다.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9조)
- 라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개정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협동조합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정함으로써”를 “규정하여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충족하여야”를 “갖춰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)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

규정에 따라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
소상공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
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
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
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<u>규정함으로써</u>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 <u>규정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금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가. ~ 라. (생 략) <신 설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.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「 <u>신용협동조합법</u> 」에 따른 <u>신용협동조합</u> 또는 <u>신용협동조합중앙회</u>
3. ~ 6. (생 략) 제5조(특례보증 지원대상) ① (생 략) ②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<u>충족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청년창업자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	3. ~ 6. (현행과 같음) 제5조(특례보증 지원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갖춰야</u> -----. -----

소상공인은 제3호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. <u>1. 대표자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</u> 2. ~ 5. (생략) ③ (생략) 제6조(특례보증 지원내용) ① (생략)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<u>아니한</u>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u><신설></u> <u>제9조</u> (생략)	----- -----. <u><삭제></u> 2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6조(특례보증 지원내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않은</u> ----- -----. <u>제9조(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)</u> 시장은 <u>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</u> <u>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</u> 지원할 수 있다. <u>제10조</u> (현행 제9조와 같음)
--	---

관계법령

□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「신용협동조합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신용협동조합"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.
2. "신용협동조합중앙회"(이하 "중앙회"라 한다)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.

소 관 부 서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김 차 병
	담 당	김 태 식
	담 당 자	이 정 희 (480-2632)